

의안번호	제 208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3년 3월 7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8

제출연월일 : 2023년 3월 7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국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육성 계획 등의 수립·시행과 국방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각종 육성사업의 추진 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방산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국방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안 제5조~제10조)
- 국방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및 위탁 근거(안 제11조)
- 국방산업 육성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한 비용 지원(안 제12조)
- 육성사업의 수탁자 등에 대한 지도·점검(안 제13조)
- 국방산업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안 제14조)

3. 의안전문 : 불 입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입

5. 관계법령 발체 : 불 입

6. 비용추계서 : 불 입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국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방위산업

다. 방위산업물자 또는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산업

2. “국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이란 국방산업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방산업의

육성 및 국방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국방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방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국방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국방산업육성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국방산업 관련 연구개발 과제 선정·공모·평가에 관한 사항
3. 국방산업 관련 산업체와의 기술협력 및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국방산업 관련 벤처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방산업 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과학인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국방산업 육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국방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

의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기관의 임원

2. 그 밖에 도지사가 국방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국방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국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
2. 국방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3. 국방산업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4. 국방산업 국내외 시장 개척사업
5. 산·학·연·관·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사업
6. 국방클러스터 조성사업

7. 지역산업체의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이나 기업지원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그 밖에 도지사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기업·법인 및 단체

제13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수탁자등에게 사업 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필요한 보고서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등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국방산업발전과 관련하여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민·군기술협력사업) ① 정부는 민과 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군기술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민·군점용기술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

나.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중 민과 군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가장 우수한 기술능력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술개발사업

다.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등 민과 군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체계와 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라.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비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

2. 민·군기술이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민과 군이 보유하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업

나.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민과 군의 협력 기술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 시범이나 민간의 수요검증을 거쳐 실용화하는 사업

3. 민·군규격표준화사업: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의 표준화 사업

4.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민과 군의 연구개발 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시설 및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

□ 방위사업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방위산업”이라 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을 말한다.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국방산업 육성을 위해 한정된 혁신기관과의 협조 체계에서 보다 넓고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임

2. 비용 발생 요인

- 국방산업 관련 협회·협의회 육성 지원

3. 관련조문

- 안 제12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국방산업 관련 협회·협의회 육성 지원

나. 추계 결과

- 국방산업 관련 협회·협의회 육성 지원 : 10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자체재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과학인재국 산업육성과장 이용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국방산업 관련 협회·협의회 육성 지원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세외수입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